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46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1 No.4 pp.205-213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우선제도에 관한 소고: 관련 규정의 용어 정의 및 해석*

정동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우선제도의 용어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 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소의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것" 을 말한다. 둘째, "기술실시능력" 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 성과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한 공정기술의 향상 등 '기술을 사업화 또는 실용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역량" 을 말한다. 셋째, "우선적으로 고려" 에 있어 "우선" 이라 함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여러 곳일 경우에, 먼저 중소기업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하도록 기술보유기관에 대해 일정한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과의 기술계약체결을 위한 '노력' 을 충분히 한 것으로서 본 규정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용어 정의 및 해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인 점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술실시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및 해석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중소기업 우선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 용어 정의 및 해석, 기술실시능력, 우선적으로 고려

Ⅰ. 서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R&D를 통해 얻어지는 성과를 활용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R&D의 가치는 연구성과의 창출과 활용에 있으며,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활용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R&D라 할 수 있다(정동덕 외, 2013).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성과들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윤종민, 2014).

특히 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창조경제의 실현이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과학기술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허나 논문같은 '중간재' 성격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꾸준히 생산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될 때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기술이전·사업화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은 창조경제실현의 핵심과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부경호 외, 2015; 이길우 외, 2015). 그러나 건당 기술료는 오히려 감소하는(미래창조과학부 A, 2016) 등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 육성이나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 등에 있어서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부경호 외(2015)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이 미진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활용 준거제도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장 경쟁의 현실과 기술의 특성을 무시한 통상실시 원칙,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국가경제·산업기여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중소기업 우선 원칙, 급속하게 짧아지고 있는 신기술 개발주기와 적기 사업화 기간을 무시한 출원 중 지식재산권 양도 제약, 국경이 사라진 교역시장의 변화에 반하는 국내 기업 우선 원칙과 기술의 해외 수출·이전에 따르는 절차적 복잡성 등이 '기술이전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의 준거법령을 통해 시장 규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활용 제도 중 중소기업 우선제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가 선언적·훈시적 원칙만 있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등 연구성과 활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부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종합조정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졌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ttjung@kistep.re.kr
· 투고일: 2016-05-17 · 수정일: 2016-08-01 · 게재확정일: 2016-08-24

경호 외, 2015; 유병돈, 2014). 즉, 현장 실무에서는 현행 규정상의 '중소기업 우선제도'에 관한 법해석상의 불명확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 우선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지침이나 예외적 규정 등이 부재하여 성과활용 촉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우선제도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본 연구의 주요 범위는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중소기업 우선제도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의 명확화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제기된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연구가 아니라 현장실무에 적용 가능한 현장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 경쟁국의 중소기업 우선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개선 필요성, 특히 관련 용어의 명확한 정의 및 해석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을 하고, 제Ⅴ장 향후 연구방향으로서 중소기업우선제도의 적용 불가시 기술실시 방안을 제언하고, 제Ⅵ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중소기업 우선제도 현황

2.1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원칙으로서 중소기업 우선원칙을 법제화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위임)하고 있으며(제11조의3 제3항), 위 위임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할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이하, '중소기업 우선제도'라 함). 다시 말하면,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성과를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한'참여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되, 참여기업이 아닌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할 경우에는'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실시계약은 그 기술의 개발에 참여한 참여기업에게 우선권을 주되(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와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주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규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중소기업 우선제도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2 주요국의 현황

일본・EU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우선제도와 같은 유사한 제약이 없다[1]. 미국의 경우 유사한 규정[2]이 있으나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율은 47%로서 사실상 동 제도가 전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술 이전이 중소기업으로 집중(91.4%)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대기업에 이전되는 비율이 각각 35.4%, 54.5%로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의 유통구조와 정부 R&D에 대한 산업계의 관점 및 R&D주체의 시장에 대한 접근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에 확연하게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자별 기술이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R&D 특허는 대부분 중소기업(비중 91.4%,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4.5%)으로 기술이전이 되고, 대기업으로 기술이전 비중(4.7%)은 낮고, 감소 추세이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전체 기술이전 중 0.3%에 불과하다(특허청, 2015). 이같이 중소기업에 치중된 기술이전 구조는 사업화 가능성 외에 다른 공익적 고려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바, 투자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곤란한 기술같은 것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도 적시에 이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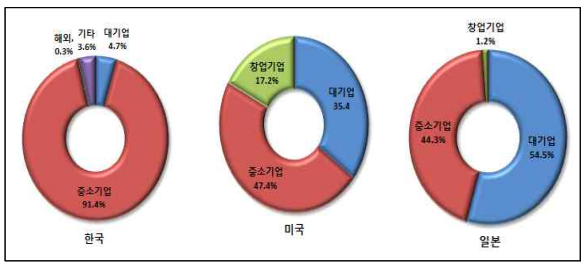

출처 : 특허청(2015), 2014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2015.12) AUTM Licensing Activity Survey 2010, 일본대학지적재산연보 2010)

<그림 1> 정부 R&D 특허의 기술 도입자 현황

1) 일본은 참여기업 우선실시, 자국의 중소기업 우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EU에서는 연구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5)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발명제품의 미국 내 제조에 합의한 자에게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국 내 제조에 합의한 자에게 기술실시권 부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미국 내 제조가 불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Ⅲ.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개선 필요성[3)]

3.1 사례조사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공급자인 과학기술계 출연(연)과 연구관리전문기관, 온라인 싸이트를 통해 사례조사를 하였다.

<표 2> A출연(연)(기술이전담당부서)의 사례

중소기업 우선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한 방법으로 NTB[4)] 등에 1년간에 걸쳐 기술자료를 공시하는 데, 1년 여년이 지나도 중소기업이 발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술의 특성상 기술실시계약은 시의성이 중요한데, 중소기업 우선제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중소기업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가?

<표 3> B연구관리 전문기관 상담 사례

문) 기술이전을 하려고 하는 데 NTB에 등록하고 ETRI에서 하는 기술설명회에도 참여해서 기술발표도 했는데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우선제도를 충족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더 기다려야하는 가? 답) 기술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한 귀 기관의 노력한 것도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그러한 참여 실적이라든가 노력했다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다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표 4> R&D도우미센터 상담사례

문) 다른 기업을 찾는다면 어느 수준까지 찾아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기관홈페이지 및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이전사이트에 1~2주 정도의 기관동안 팝업창 및 게시판에 공지하는 방안(1안)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기술거래장터의 기술설명회에 참석하는 방안(2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안 정도면 충분한지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문의드립니다[5)]. 답) 다른 실시기업 후보를 탐색하는 방법과 수준은 상대적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방안 1,2 외에도 더 많은 방안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상기 방안 1,2 밖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찾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조사 결과,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하도록 기술보유기관이 일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한다는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가 선언적·훈시적 성격으로서 법해석상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즉, 공공기술의 실시계약을 할 경우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선언적·훈시적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우선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설문조사

3.2.1. 개요

설문조사는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 전체에 대해 응답 논리체크 등을 시행하고,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결과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 ver13.0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고,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ANOVA와 Chi 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설문항목 들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SPSS Ver.13을 활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은 <표 5>, <표 6>와 같다.

<표 5>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방법	on-line 조사(전화 독려 병행)	
조사 대상	대학	국가R&D사업 주요 참여 69개 대학
	출연(연) 및 국공립(연)	과학기술계 출연(연) 및 국공립(연)
	기술중개기관, 기술사업화기관 등	기술이전법 지정 67개 기술 거래기관, 기술보증기금, 테크노파크, 협회, 재단 등 기술사업화 관련 19개 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기업 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1,5000개 회원사
표본 추출 방법	임의 표본 추출	
조사 기간	2016년 01월 06일 ~ 2016년 01월 20일(약 2주간)	
조사내용	- 기술계약 체결시 중소기업 우선제도 인지 여부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필요성 - 현행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현장 실무 애로 여부 -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개선시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 필요성 등	

<표 6> 응답자특성

구 분			사례수	%
전 체			348	100.0
기술공급자·매개자 등	소속기관 (중분류)	공급기관	188	54.0
		제도전문기관	35	10.1
		중개(매개)기관	18	5.2
		수요기관	107	30.7
	소속기관 (소분류)	출연(연) 및 특정(연)	79	22.7
		대학	109	31.3
		연구관리전문기관	35	10.1
		기술거래기관	12	3.4
		기술사업화 관련기관	6	1.7
		대기업	1	0.3
		중견기업	12	3.4
		중소기업	94	27.0
기업의 경우 경험 여부 (중복)		국가R&D사업 참여 경험 있음	70	65.4
		공공기술 실시계약 경험 있음	6	5.6
		둘 다 경험 없음	35	32.7

3.2.2. 설문조사 결과

기술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 우선제도에 대해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3.65점/5점으로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67.2%가 중소기업 우선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전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3) 세부적인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2016)B, "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016.2) 참조

4) NTB는 국가기술은행(National-Tech Bank)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인 기술요약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NTB에 등록하여야 한다.

5) 마래창조과학부(2016), R&D도우미센터Retrieved 2016. 6.15 from https://www.rndcall.go.kr/index.jsp.

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8>). 현재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규정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해 현장 실무에서 애로여부에 대해서는 전반적(3.54점/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9>).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규정의 불명확성과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개선 필요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0> 와 같이 유의확률 p<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기술계약 체결시 중소기업 우선제도 인지 여부

[단위 : 개,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모르고 있다	조금 모르고 있다	보통이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평균(5점)	F값	유의확률
전 체		241	11.6	7.5	13.3	39.8	27.8	3.65	-	-
소속기관 중분류	공급기관	188	13.3	8.5	16.0	38.3	23.9	3.51	5.633	0.004**
	제도전문기관	35	8.6	2.9	5.7	45.7	37.1	4.00		
	중개(매개)기관	18	0.0	5.6	0.0	44.4	50.0	4.39		
소속기관 소분류	출연(연) 및 특정(연)	79	10.1	7.6	12.7	39.2	30.4	3.72	3.883	0.004**
	대학	109	15.6	9.2	18.3	37.6	19.3	3.36		
	연구관리전문기관	35	8.6	2.9	5.7	45.7	37.1	4.00		
	기술거래기관	12	0.0	0.0	0.0	50.0	50.0	4.50		
	기술사업화 관련기관	6	0.0	16.7	0.0	33.3	50.0	4.17		

***p<0.001, **p<0.01, *p<0.05

<표 8> 중소기업 우선제도 유지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중소기업 우선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전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안내문)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기타	카이 제곱값	유의확률
전 체			348	67.2	26.1	5.2	1.4	-	-
소속기관 중분류	공급기관		188	72.3	17.6	7.4	2.7	52.381	0.000**
	제도전문기관		35	94.3	0.0	5.7	0.0		
	중개(매개)기관		18	50.0	50.0	0.0	0.0		
	수요기관		107	52.3	45.8	1.9	0.0		
소속기관 소분류	출연(연) 및 특정(연)		79	70.9	20.3	6.3	2.5	31.286	0.002**
	대학		109	73.4	15.6	8.3	2.8		
	연구관리 전문기관		35	94.3	0.0	5.7	0.0		
	기술거래기관		12	33.3	66.7	0.0	0.0		
	기술사업화 관련기관		6	83.3	16.7	0.0	0.0		
	수요기관		107	52.3	45.8	1.9	0.0	3.302	0.509
소속기업 해당분야	국가R&D사업 및 공공기술 실시계약 경험있음	국가R&D사업 경험있음	70	47.1	51.4	1.4	0.0	2.876	0.237
		공공기술 실시계약 경험있음	6	66.7	33.3	0.0	0.0		
		둘다 경험없음	35	62.9	34.3	2.9	0.0		
국가R&D사업 참여경험	경험있음		66	45.5	53.0	1.5	0.0	3.643	0.162
	경험없음		41	63.4	34.1	2.4	0.0		

***p<0.001, **p<0.01, *p<0.05

<표 9>현행 규정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해 현장 실무에 애로 여부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5점)	F값	유의확률
전 체		241	2.5	9.1	28.6	51.5	8.3	3.54		
소속기관	출연(연) 및 특정(연)	79	1.3	11.4	25.3	49.4	12.7	3.61	-	-
	대학	109	0.0	8.3	34.9	49.5	7.3	3.56		
	연구관리전문기관	35	8.6	8.6	17.1	60.0	5.7	3.46	0.77	0.544
	기술거래기관	12	16.7	8.3	16.7	58.3	0.0	3.17		
	기술사업화 관련기관	6	0.0	0.0	50.0	50.0	0.0	3.50		

<표 10>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과 개선 필요성간의 관계

	베타 값	t 값	유의 확률(P값)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	0.370	4.391	0.000

***p<0.001, **p<0.01, *p<0.05

3.3 소결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고 본 제도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본 제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R&D사업 참여 경험이나, 공공기술 실시계약 경험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본 제도가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출연(연)에 비해 대학이 낮아 동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규정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해 현장 실무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다. 셋째,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Ⅳ. 중소기업 우선제도 관련 규정의 용어 정의 및 해석

4.1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취지와 목적

중소기업 우선제도는 공공자금이 지원되어 개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의'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있어'국내 실시원칙'

과 함께, 공공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기술의 개발 및 적용 등 기술혁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기술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발전 및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연구개발 성과를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우선제도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제119조 제2항)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 의무'(제123조 제3항) 등을 규정한 우리 헌법상의 경제원칙을 구체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4.2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법적 근거와 연혁

4.2.1. 법적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우선제도'는 앞서 설명한 우리 헌법상의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에 관한 규정을 이념적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법령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하여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그 위임 규정에 따라 성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위임)하고 있으며(제11조의3 제3항), 위 위임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할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다시 말하면,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성과를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한 '참여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되, 참여기업이 아닌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2.2 입법 연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 우선제도는 2013년 9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면서 최초로 제도화되었다. 이에 앞서, 2007년 2월 미국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내 자 우선원칙'을 규정한 바,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의 대상자로 고려'하도록 하였으며(제17조 단서규정 신설), 2010년 8월에는 이를 보완하여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좀 더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국내 자 우선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 9월 동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표 11> 중소기업 우선제도 도입 경과

구 분	공동관리규정 개정 내용	비 고
'07. 2. 8.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도록 규정	국내(사업)자 우선원칙
'10. 8. 11.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수정	기술실시능력 자 우선원칙
'13. 9. 26.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도록 재수정	기술실시능력 있는 중소기업 우선원칙

4.2.3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용어의 의미와 해석

중소기업 우선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용어는 ① 국내의, ②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③ 중소기업, ④ 우선적으로 고려 등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의미와 해석을 하고자 한다.

4.2.3.1. 국내

'국내'라 함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즉, 우리나라에서 사업소의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는 공공자금이 지원되어 개발되고, 특히 국가의 과학기술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성과의 활용은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국내의'는 '국내에 소재하는'으로 해석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실제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4.2.3.2. 기술실시 능력

기술의 '실시'라 함은 특허법상으로는 기술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2조 각 호 참조). 즉, 해당 기술이 '물건'에 대한 발명기술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의 사업화를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및 이들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또는 이들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말하므

로, 기술사업화는 이들 지식재산, 자본재 또는 이들에 관한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및 판매하는 활동이나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 과정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술의 실시 능력'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 성과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한 공정기술의 향상 등 '기술을 사업화 또는 실용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실시계약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기술실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실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기술실시계약을 맺고자 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제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실시 기술 및 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개발이나 공정개선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2.3.3.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서 정의되고 있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기업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3.4. 우선적으로 고려

'중소기업 우선제도'는 법 문구 그대로,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연구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실시계약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과 먼저 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선'이라 함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여러 곳일 경우에, 먼저 중소기업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즉,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하도록 기술보유기관에 대해 일정한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훈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은 보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설명회 개최, 기술실시대상 중소기업의 발굴, 적정 중소기업과의 계약체결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우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과의 기술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서 본 규정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Ⅴ. 중소기업우선제도의 적용 불가시 기술실시 방안

5.1 예외규정 등 세부지침 제정 방안

현재 실무에서 '중소기업 우선제도'로 인하여 기술이전·사업화 등 성과활용 촉진이 곤란하다고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규정상의 '중소기업 우선제도'에 관한 법해석상의 불명확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 우선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지침이나 예외적 적용규정 등이 부재하여 성과활용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는 앞서 설명한 규정 해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술실시 계약체결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추가제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현장의 기술실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지침)설정 방안으로서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1의 방안은, 현행 공동관리규정에 일정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중소기업 또는 기타의 기업에게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2의 방안은, 동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지침제정 또는 예외규정의 마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관련 기준과 원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술실시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해도 기술실시 대상 중소기업을 발굴할 수 없는 경우, 순차적인 기술실시대상 기업을 어떻게 발굴·선정할 것인가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2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지침) 설정방안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두 가지 방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바, 정책적·실무적 측면의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시행시기'와 '입법추진의 용이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제1방

안은 입법적 측면에서 현행 공동관리규정에 일정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공동관리규정에 원칙규정과 예외적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법규 운영의 일체성을 높이고, 제도시행의 복잡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의 제정이 아닌 기존 법(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점에서 입법추진의 용이성 및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추상적·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향후 규정해석상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될 우려가 있다.

제2방안은,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별도의 지침으로 제정하여 우선대상 중소기업의 선정방법 및 우선대상 중소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기술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도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규정해석상의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별도의 지침 제정에 따르는 입법추진의 어려움이 따르고, 공동관리규정과 별도의 지침을 이중으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복잡성이 발생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하고, 특히 실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술실시의 곤란성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등의 시기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예외사항을 공동관리규정에 추가 규정하여 제도운영의 일체성과 편의성 및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기적 제도화방안으로서 일정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는 방법 및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동관리규정상의 해당 조항에 단서규정으로 추가하거나, 하위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2문에 단서규정으로 '예외적 사항[6]'을 추가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예외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예외적 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 및 실무차원의 논의를 통해 그 내용 및 규정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6.1 의의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과 관련된 중소기업 우선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용어 정의 및 해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지식재산권·기술거래 활성화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6.2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첫째, '기술실시 능력의 보유 여부' 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는 기술실시계약을 할 때에는 "기술실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실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기술실시계약을 하고자 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제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실시 기술 및 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개발이나 공정개선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해 기술실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예시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 수요자의 기술개발능력, 사업화 능력, 현재 상태에서의 신용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기술 수요자가 기술 사업화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개인, 법인기업의 대표자 등), 자산, 신용상태는 물론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술 수요자의 기술실시능력 보유 여부는 기술이전 이후 사업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다. 기술능력의 검증을 위해서 기술 수요자가 대외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 수요자의 사업화능력은 사업의 성격 및 제조 품목, 생산능력을 기초로 하여 크게는 인적 요소, 자본적 요소, 경기 변동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재무제표나 홍보 보고서 등의 서류를 중심으로 사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지 예상 등을 검토하는 외에 업계의 동향이라든가 그 업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술수요기업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향후 기술 수요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요긴한 것이므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되거나 부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금융거래상의 심각한 불량정보를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한계는, 기술실시 계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기술의 속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시의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적기의 기술실시 계약은 기술이전·사업화 등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충분한"

6) 예시로서, " …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 …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제3의 중소기업 또는 기타의 기업에게도 기술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해도 대상 중소기업을 발굴할 수 없는 경우, 순차적인 기술실시대상 기업을 어떻게 발굴·선정할 것인가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의가 뒤따른다면 보다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REFERENCE

부경호·고기석·이태한·송상엽·류태규(2015). 우리 기술시장의 정책적 동인 : 실패의 궤적과 그 치유,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35-54

이길우·안지혜(2015).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병돈(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해외 기술이전시 제도적 규제 및 개선방향,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101-111

윤종민(2014).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법제 운영에 관한 소고, 기술혁신학회지17(3), 521-539

정동덕·정도범(2013).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역량 및 활동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연구, 21(2) : 199-220.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5).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방안, (2015.4)

미래창조과학부(2016a).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6~2020), (2016.1)

미래창조과학부(2016b).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16.2)

특허청(2015). 2014년도 정부 R&D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2015. 12.)

마래창조과학부(2016). R&D도우미센터 Retrieved 2016. 6.15 from https://www.rndcall.go.kr/index.jsp.

Boo, K. H., Ko, K, S., Lee, T, H., Song, S, Y. & Ryu, T. K .(2015). Policy Drives in Technology Market of Our Country : The Trajectory & Healing of Failure, Spring 2015 Conferenc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35-54.

Lee, K. W. & Ahn, G. H.(2015). A Study on Activation Technology Transfer & Commercialization for creative economies, KISTEP.

Yoo, B. D(2014).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regulations and technology transfer abroad of National R&D outputs. Spring 2014 Conferenc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01-111.

Yoon, J. M(2014). A Study on the operation of National R&D performance management laws,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7(3), 521-539.

Jung, D. D. & Jung, D. B.(2013). The Effects of Performance Management & Application Capabilities and activities on Technology Transfer from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1(2), 199-220.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2015). Revitalization of Market leading IP & Technology Transfer.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2016a), Third round of basic research management & Utilization plan (2016 to 2020)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2016b). A Study on strategic operation of the SMEs Priority System in National R&D programs.

Patent and Trademark Office(2015). Survey & Analisis result of Government R&D Patent performance in 2014

https://www.rndcall.go.kr

A Study on the SMEs Priority System in National R&D programs: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erms*

Jung, Dong Duck**

Abstract

This study clarified the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erms relating to SMEs Priority System. First, 'Domestic' is defined that the address of office is in our country. Second, 'Technology utilization capacity' is defined that the de facto capacity to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utilization. for example. development or production or sales activity of the production using national r&d performance. Third, 'priority' in priority consideration is defined that when there are many companies trying sign technology utilization contract, technology providers shoud provide the opportunity of signing contract to SMEs primarily. 'priority consideration' is defined that technology providers shoud try to do enough to sign a contract with SM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raising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SMEs Priority System.

Key words: SMEs Priority System, Output Utiliz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erms, Technology Utilization Capacity, Priority Consideration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KISTEP), ttjung@kistep.re.kr